

1. 개정이유

2026. 10. 2.부터 개정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및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절차의 세부 규정을 정비하여 국가소송업무 처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국가소송절차의 수행과 관련된 검사의 직무가 공소청 검사의 직무가 됨에 따라, 국가소송의 수행, 집행 및 보고 등의 절차에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개정함(안 제3조, 제6조, 제11조, 제19조, 제22 내지 24조, 제29조,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 나. 국가소송절차 중 소송진행상황 보고, 상소, 확정기록 송부, 가집행, 임의변제상황 보고, 송무통계보고 절차에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으로 개정(안 제18조의2, 제19조, 제21조, 제25조, 제28조, 제34조)
- 다. 개정 관련 별표 및 별지 서식 정비(별표안, 서식안 제1 내지 3호, 제8 내지 10호, 제32호, 제34호의2, 제34호의3, 제35 내지 35호의4호, 제38호, 제39호, 제41호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정부조직법, 공소청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당해검찰청”을 “당해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청의”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단서 중 “해당검찰청”을 “해당공소청”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중 “검찰청 검사장”을 “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고등검찰청 검사장은”을 “지방공소청장 및 광역공소청장”으로, “해당검찰청”을 “해당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청”을 “해당 공소청”으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으로, “관할검찰청”을 “관할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관할검찰청이 지방검찰청”을 “관할공소청이 지방공소청”으로,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한다.

제22조 본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3조 중 “검찰청”을 “각급 공소청”으로 한다.

제24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5조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지방검찰청”을 “광역공소청장이 법원으로부터 지방공소청”으로,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관할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 또는 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검찰청에서 작성한”을 “관할 공소청에서 작성한”으로, “해당검찰청”을 “해당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검찰청별”을 “각급 공소청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 및 광역공소청장”으로, “상급검찰청”을 “상급공소청”으로 한다.

제35조 본문 중 “검찰청의 장이”를 “공소청의 장이”로, “검찰청의 장을”을 “공소청의 장을”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의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문 서 명	소송종류	광공·지공	공 소 청
-------	------	-------	-------

별지 제1호서식 중 “고(지)검”을 “광(지)공”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고 검”을 “광 공”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대 검”을 “공 소 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고(지)검”을 “광(지)공”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고 검”을 “광공”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대검”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고(지)검”을 “광(지)공”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검찰사건번호)”를 각각 “(공소청사건번호)”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고(지)검”을 “광(지)공”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고 검”을 “광공”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대검”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의2서식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의3서식 앞면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앞면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기호(○) 중 “○○검찰청 검사장”을 “○○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 중 “○○검찰청 검사장”을 “○○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의3서식 중 “대검사건번호”를 “공소청사건번호”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고(지)검사건번호”를 각각 “광(지)공사건번호”로 하며, 같은

서식 중 “대검사건”을 “공소청사건”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고(지)검사건”을 “광(지)공사건”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의4서식 중 “○○검찰청 검사장”을 “○○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대검”을 “공 소 청”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고검 또는 지검”을 “광공 또는 지공”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중 “○○검찰청 검사장”을 “○○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의 기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기호(○) 중 “○○검찰청 검사장”을 “○○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의2서식 중 “○○검찰청 검사장”을 “○○공소청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행정문서의 분류)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는 <u>당해검찰청 또는 행정청의 장</u> 이 다시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제3조(행정문서의 분류) ① (현행과 같음) ② ----- <u>당해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
제6조(장부의 종류) ① 각급 <u>검찰청의 장</u> 은 별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장부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1. ~ 13. (생략) ② (생략) ③ 각급 <u>검찰청</u> 또는 행정청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외의 장부를 비치·사용할 수 있다. ④ (생략)	제6조(장부의 종류) ① ---- <u>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u> -----. 1.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u>공소청</u> ----- ----- ----- -----.
제11조(소송행위승인) ① ~ ③ (생략) ④ 삭제 ⑤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의 직원만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사건은 소송물가액이 5천만원미만인 민사본	제11조(소송행위승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⑤ ----- ----- ----- -----.

안사건 및 민사신청사건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그 소송수행자가 소의 제기 및 취하, 상소의 제기·포기 및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락, 청구의 변경,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등의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소송진행상황의 보고 등) ① (생략)

②국가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에 따른 상소의견서를 작성하여 즉시 법무부장관 또는 해당 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9조(국가소송사건의 상소절차와 기록의 송부)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국가소송에 관한 해당심급의 판결·결정 또는 명령에 불복하여 상소·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사건기록에 불복이유서 또는 상소이유서를 첨부하여 2주일 이내에 이를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여 해당검찰

해당공소청

제18조의2(소송진행상황의 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공소청장 -----
-----.

제19조(국가소송사건의 상소절차
와 기록의 송부) ①지방법원
장 및 광역공소청장 -----

----- 해당공소

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송부하지 아니하
 고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의한
 상고심계속사건보고서와 별지
 제35호의3서식에 의한 사건표
 만을 검찰총장에게 송부하고,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대법원판결사본을 첨부하여 별
 지 제35호의4서식에 의한 재판
 결과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송
 부한다.

② 제1항의 사건기록을 송부받
 은 검찰청의 장은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
 한 후 그 지정서 또는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확정사건기록의 송부) 고
등검찰청 검사장 및 검찰총장은
 국가소송의 판결·결정 또는 명
 령이 확정된 때에는 사건기록에
 확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20일
 이내에 이를 제1심사건 관할검
찰청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제1심 관할검찰청이 지방
검찰청인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

청-----.

 -----.

②-----
 -- 해당 공소청-----

 -----.

제21조(확정사건기록의 송부) 광
역공소청장 -----

 ----- 관할공
소청-----.
 ----- 관할공소청이 지방
공소청----- 광역공

찰청을 경유하여 송부해야 한다.

제22조(소송비용의 지급) 각급 검찰청 또는 행정청의 장이 법원 및 집달관에 예납하는 각종 소송비용은 법원의 납부명령서 또는 집달관의 집행비용청구서 정본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소 또는 상소제기시에 예납하는 송달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예납소송비용의 정산) 소송수행자는 당해 심급에서 종국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법원으로부터 예납한 소송비용의 정산을 받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세입조치한 후 소송수행자를 지정한 검찰청 또는 행정청의 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소송비용등의 보전) 각급 검찰청의 장은 특별회계 소관사항을 위하여 지급한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를 소관회계로부터 보전 받아야 한다.

제25조(가집행 선고부 판결의 집행)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법원

소청-----
--.

제22조(소송비용의 지급) -- 공소청 -----

-----.

제23조(예납소송비용의 정산) --

----- 각급 공소청 -----
-----.

제24조(소송비용등의 보전) ---
공소청-----

-----.

제25조(가집행 선고부 판결의 집행) 광역공소청장이 법원으로부터

으로부터 지방검찰청에서 제1심소송을 수행한 사건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판결을 받은 때에는 즉시 제1심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집행문이 있는 판결문 정본을 송부한다.

제28조(임의변제상황 보고)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매월 임의변제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안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고용원 또는 합중국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의 구성원의 직무집행중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이하 “행협손해배상청구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의변제를 한

터 지방공소청-----

----- 관할 지방공소청
장-----
-----.

제28조(임의변제상황 보고) ① 지방공소청장 또는 광역공소청장

--.

② 지방공소청장 또는 광역공소청장-----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별지 제 39호서식에 의한 행협손해배상 청구사건 임의변제보고서에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보존기관) ①검찰청에서 작성한 사건기록은 제1심 해당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② (생략)

③장부는 작성한 각급 검찰청 또는 행정청에서 보존한다.

제33조(소송사무보고) ①각급 검찰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소송사건에 대해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그 접수·진행상황 및 재판결과를 지체 없이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 3. (생략)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행협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판결문을 송달 받은 때에는 제1항 각호 해당여부를 불문하고 그 재판결과를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보고서에 판결문사본 2부를 첨부하여

-----.

제29조(보존기관) ①관할 공소청에서 작성한 ----- 해당 공소청-----.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소청 -----.

제33조(소송사무보고) ①--- 공소청-----

-----.

1. ~ 3. (현행과 같음)

②-- 공소청-----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 ⑥ (생 략) 제34조(송무통계보고) ①검찰총장 은 소송사건의 통계를 <u>검찰청별</u> 및 종류별로 종합하여 월표는 다음달 15일까지, 연표는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u>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의</u> <u>검사장</u>은 제2항의 통계를 <u>상급</u> <u>검찰청</u>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제35조(보고방식) <u>각급 검찰청의</u> <u>장이</u> 법무부장관에게 행하는 각 종 보고는 <u>상급 검찰청의 장</u>을 거쳐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에 <u>상급 검</u> <u>찰청</u>의 장에게 그 뜻을 보고할 수 있다.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4조(송무통계보고) ①----- ----- <u>각급 공소</u> <u>청별</u> ----- ----- ----- -----. ② (현행과 같음) ③<u>지방공소청장 및 광역공소청</u> <u>장</u>----- <u>상급공</u> <u>소청</u>----- --. 제35조(보고방식) --- <u>공소청의</u> <u>장이</u> ----- ----- <u>공소청의 장</u>을 -----. ----- ----- <u>공</u> <u>소청</u>----- -----.
---	---